

청주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601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상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지영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해,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3. 31.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 4. 6. 접수 제445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해,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3. 31.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21. 4. 7. 접수 제29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27.경 B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D은행 북문로지점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그 무렵 이를 위 은행에 제출하고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C이 2021. 2. 23.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2021. 5. 4.경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자 원고는 위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1. 12. 27.

241,070,2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483,581원을 상환받았다.

다. 원고는 2022. 3. 17. 대전지방법원 2022차전104709호 구상금 사건을 통해 “C과 B은 연대하여 240,586,9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의 대표자인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21. 3. 31.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1. 4. 6.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445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21. 3. 31.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1. 4. 7.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접수 제29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이하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을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대물변제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등기’이라 한다).

마. B은 이 사건 계약이 이뤄질 무렵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E 주식회사, F조합,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이 법원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소외 은행으로부터 C에게 대출이 실행되었고, C이 2021. 2.

23.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하다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5. 4.경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으며, 2021. 12. 27.경 실제로 원고가 소외 은행에 C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성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B이 C의 주식 16,4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 C의 1주당 가치가 44,671원이므로

위 주식 가치만 해도 732,604,400원으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피고가 주장하는 C 주식의 가치는 2019. 2. 16.을 기준으로 한 것인 점, C은 2021. 1.분기부터 매출과 매입이 전분기에 대비하여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1달여 만에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으며, 결국 2022. 4. 25. 폐업한 점에 비추보면, 위 계약 체결 당시 C의 가치는 위 2019. 2. 16. 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거의 가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20. 8. 31.경 C에게 3억 5,2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B이 연대보증하였고, 위 돈을 총 4차례에 걸쳐 변제받는 것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마지막 변제기일인 2021. 2. 3.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자 B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며, 피고는 B의 채무초과 사실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룡

